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9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, 마포구 대표 구립도서관으로서 총괄 기획 및 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업소의 장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조)

나. 미래교육국 분장사무에서 도서관 운영 관련 사무를 조정
(안 제7조)

다.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위치를 규정(안 제15조)

라. 마포중앙도서관 관장의 직무를 규정(안 제16조)

마. 사업소 신설에 따른 장(章) 및 조문 번호를 정비
(안 제4장, 제17조부터 제20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6. 8. 6. ~ 8. 1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[법무팀 의견]

관 계 법 령	-
법무팀 검토의견	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을 사업소로 두어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
참고사항	-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**담당관·과장**”을 각각 “**담당관·과장, 사업소의 장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
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5장 및 제6장으로 하고,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사업소

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8조를 제20조로 하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설치)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마포중앙도서관을 둔다.

② 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에 둔다.

제16조(관장) 마포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장 및 담당관 · 과장의 직 급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, 본청 · 보건소의 <u>담당관 · 과장</u> , 동장 등의 직급 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조(국장 및 담당관 · 과장의 직 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담당관 · 과장, 사업소의 장</u> --- -----.
② 구본청 및 보건소의 <u>담당관 · 과장</u> ,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② ----- <u>담당관 · 과장, 사업소의 장</u> ----- -----.
제7조(미래교육국) ① (생 략)	제7조(미래교육국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미래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평생교육, 도서관 설립 및 운 영 감독, 독서진흥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</u>	2. <u>평생교육에 관한 사항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장 <u>사업소</u>
<u><신 설></u>	제15조(설치) ① 법 제127조에 따 <u>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에 마포중앙도서관을 둔다.</u>
	② <u>마포중앙도서관은 서울특별 시 마포구 성산로 128에 둔다.</u>

<u><신 설></u> <u>제4장 동</u> <u>제15조</u> ~ <u>제17조</u> (생 략) <u>제5장</u> 조직관리위원회 <u>제18조</u> (생 략)	<u>제16조(관장)</u> 마포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u>제5장 동</u> <u>제17조</u> ~ <u>제19조</u> (현행 제15조부 터 제17조까지와 같음) <u>제6장</u> 조직관리위원회 <u>제20조</u> (현행 제18조와 같음)
---	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관리국 총무과 황신혜
연 락 처	02-3153-8213